



해외의 식품 포장법 규제를 둘러싼 최신 동향

The Latest Trend in Food Packaging Regulation in Overseas

西季樹 / 도칸흥업 (주) 종이용기 판매본부 시장개발부

I. 서론

식품 및 그 원재료의 글로벌화가 진행되어 기업에 있어서의 원재료의 트레이서빌리티와 판매처의 법 규제에의 적합성 확인이 큰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특히 수입품의 경우에는 구입하는 원재료의 메카까지 특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법 규제에의 적합성 확인 작업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에 있어서는 해당 나라의 법률이 유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고, 자원이 불충분한 무역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일본인에 있어서는 귀찮기는 하지만 피하고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관문이다.

이 포장 기술지에 있어서는 2009년 8월호에 주로 일본의 식품 위생법 개정에 관해 검토 상황과 중국의 개정의 동향을 소개했는데, 그 후 이웃 나라 중국은 더욱 개정을 진행해 주변 아시아 제국도 식품 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법 정비를 추진 중에 있고 한편 EU는 2010년 1월, 플라스틱 규제를 종래의 EC 지령에서 EU 전체를 통괄해 법

적 효력을 갖는 규칙으로 레벨 업 했다.

이번 회는 해외에 있어서 특히 최근 수년간 큰 변혁의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로써 유럽주 (EU), 및 아시아에서 중국, 한국, 타이, 인도, 베트남을 다루고, 법 개정에 관한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업의 콘플라이언스를 진행하는 데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1. 유럽주(EU)의 동향

(1) EU 통합 조직

현재 EU는 가맹 27개국, 인구 약 5억 명을 안고 있는 대경제권이다.

EU에서는 각국이 일본의 식품 위생법에 상당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 EU 내의 「물건·사람·돈」 통합의 방침에 준거해 식품 포장 재료에 관한 안전 기준의 통합이 약 30수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새롭게 정해진 안전기준은 기본적으로는 매번 EC 지령으로 가맹 각국에 통달되어 각국이 자국의 법률을 개정해서 EC 지령의 취지를 받아들이



는 것에 의해 실질적인 안전 기준의 통합이 달성 되는 것이 된다.

그리고 2010년 1월, EU는 플라스틱에 관한 규제의 규칙화(Regulation)를 단행했다. EU 전체를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하나의 규칙으로 통합하는 것이 되어 EU 통합의 관점에서는 획기적인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의 통합 작업의 기본적인 흐름을 아래에 나타낸다.

EU에 있어서는 신청자로부터 제출된 안전성 데이터를 기초로 먼저 EC 위원회의 하부조직인 유럽 식품 안전기관 (EFSA :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에서, 1993년에 나온 「Practical Guide N.1」에 기초해 개개의 화학물질의 안정성을 평가받는다. 이 신규 신청 물질의 평가 기준은, 먼저 본지에서 다루었듯이 거의 일본, 미국과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EU는 미국과 같이 역치의 개념을 아직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EFSA는 의학, 약학, 식품화학, 독성학 등의 약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일본의 식품 안전 위원회의 모델이 된 기관이다.

이 EFSA는 개개의 물질의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 심사 결과를 EC 위원회에 답신하는 것이 임무로 EC 위원회는 이 답신을 받아 EC 지령의 경우는 해당국의 비준까지의 기간을 지키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어 엄밀하게는 법적 구속력에 나라마다의 시간차가 있었다. 이 문제도 있어 앞에 언급한 법칙화로 전환한 것이라고 추

[표 1] EC 지령의 개정 개요

EC지령	제정연월	주요한 개정 내용
89/109/EEC	1989.2	총괄적 지령
90/128/EEC	1990.12	플라스틱 재료의 최초의 기본적 지령. 모노머 등의 최초의 PL
92/39/EEC	1992.6	모노머 및 그 외의 출발 원료의 추가와 삭제
93/9/EEC	1993.4	위와 같음
95/3/EEC	1995.2	모노머 등의 추가와 삭제. 처음으로 첨가제 PL을 제정 (277물질)
96/11/EC	1996.3	모노머 등의 추가와 삭제. 첨가제를 10물질 추가
99/91/EC	1999.11	첨가제를 64물질 추가. 처음으로 사용제한이 있는 첨가제 PL등록
2001/62/EC	2001.8	모노머 등의 추가 및 사용제한치의 변경, 첨가제 23물질의 추가
2002/16/EC	2002.2	에폭시수지의 사용에 관한 규정
2002/17/EC	2002.2	모노머 등의 추가 및 사용제한치의 변경
2002/72/EC	2002.8	총래의 개정을 망라한 포괄적인 지령
2004/19/EC	2004.3	액티브 및 인텔리전트 재료 및 제품의 규정
2007/19/EC	2007.3	기능성 배리어에 관한 규정, 출발원료와 첨가제 추가
2008/39/EC	2008	PL을 규칙화할 것을 결정
(EC) No.975/2009	2009	PL의 규칙화를 규정 (2010.01부터 시행)



[표 2] 총 이행량 제한치 (EU)

재료 및 제품의 종류	총 이행량 제한치
1. 플라스틱 전반 (하기 2~4 제품은 제외)	10 (mg/dm ²)
2. 용기의 형태를 한 것, 또는 이것과 동등의 제품, 또는 충전이 가능한 제품으로 용적이 500mL 이하인 것 3. 충전가능 하지만 식품과 접촉하는 표면적을 추정할 수 없는 제품 4. 캡, 개스킷, 마개, 또는 이것들과 유사한 것	60 (mg/kg-식품)

측된다.

(2) EU 법칙의 대상

법 규제의 대상은 식품 접촉 물질 (FCM : Food Contact Materials) 라고 불리는 것으로 플라스틱, 종이, 금속 등의 전 재료가 규제 대상이다. 그 FCM은 이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 식품과 접촉하는 것
- 식품과 접촉이 생기는 것
- 통상의 사용에 있어서 식품과의 접촉이 무리 없이 예상되는 것

또한, 그 구체적인 규제 대상으로서는 식품 포장재료, 식기·조리기구, 식품 제조 기계가 있다.

(3) EC 지령

1989년에 플라스틱에 관한 기본적인 규제의 생각을 정리한 총괄지령(89/109/EEC)이 제출되어 그 후 1990년에는 처음으로 모노머 및 그 외의 출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파지티브 리스트(PL)가 공포되었다. 그 후, 첨가제 PL도 추가되어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10수회의 개정 지령이 나왔다. 현재는 안전 기준의 기간이 되는 이 세 개의 PL은 서서히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다 ((표 1) 참조).

그리고 2002년에는 총괄 지령이 전면적으로 개정되고 2007년에는 기능성 배리어에 관한 지령도 나왔다.

이 EU의 안전 기준은 EU의 가맹국이 아닌 나라도 포함하는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가맹 47개국)나 구 소비에트권 제국도 채용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듯해, 장래에는 인구 약 5~10억 명을 망라하는 세계 표준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4) 플라스틱의 규제

1) 규제의 내용

플라스틱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크게 하기의 두 가지의 규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가) 총 이행량 규제 : 플라스틱제 재료 및 제품으로부터 식품에의 구성 성분의 이행량 규제.

내용적으로는 일본의 식품 위생법에 있어서의 증발 잔류물 시험에 상당하는 항목이다.

나) 파지티브 리스트 : 플라스틱제 재료 및 제품에 사용이 허가된 물질 리스트. 물질에 따라서는 사용 제한량이 규정되어 있다.

2) 총 이행량 규제의 방법

재료 및 제품의 용량이나 형태에 의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규정되고 있다(표 2). 상단은 시험 시료의 표면적에 따른 이행량, 하단은 식품 중량에 따른 이행량인데 기본적으로는 이행하는 물질의 총량으로써 「60ppm」으로 일본은 시료 표면적에 따른 용매량이 다른 점은 있지만 일본의 조건 (2ml/cm²)를 그대로 채용해서 단순 계산

[표 3] PL의 용출량 제한의 예 (EU)

사용 제한	의미
SML (Specific Migration Limit in food or food simulant)	특정 성분의 식품 또는 식품 의사(擬)용매중에서의 이행량 제한치
SML (T) (Specific Migration Limit in food or food simulant expressed as total moiety/substances(s) indicated)	지정된 기본 또는 물질 합계의 식품 또는 식품의사 용매에서의 이행 제한량
QM (Maximum permitted quantity of the residual Substances in the materials or articles)	재료 또는 제품 중의 최대 허용잔존량

[표 4] 식품의 종류와 의사용매 (EU)

식품의 종류	의사용매 (擬似溶媒)
수성식품 (pH>4.5)	Simulant A = 증류수 또는 이것과 동등한 물
산성식품 (pH?4.5)	Simulant B = 3% 초산수용액 (w/v%)
알코올성식품	Simulant C = 10% 에탄올 (v/v%) (10%를 넘을 때는 그 농도)
유성식품	Simulant D = 정제올리브오일, 또는 그 외의 유성의사용매*
	*이소옥탄, 95%에탄올, 변성 폴리페닐렌옥사이드

하면 「50(μg/ml)」이 되어 일본의 30(μg/ml) 과 거의 동등 레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파지티브 리스트 (PL)

① PL의 대상

현재 심의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다음의 두 개로 모두 허가된 물질이 알파벳순으로 수재되어 이 두 가지의 PL은 하나의 표로 정리되어 있다.

가. 모노머 및 그 외의 출발원료 (약 340물질)

나. 첨가제 (약 700물질)

이 PL은, EU의 홈페이지에서도 공개되어 폴리위협은 일역판을 회원 대상으로 출판하고 있어 참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 이외의 식품 접촉 재료(도료, 접착제, 코팅제, 인쇄잉크 등)는 현 시점에서는 아직 EU 로써의 PL은 없고 각국의 국내법에서 규제되어 있는 것이 된다.

EU의 PL의 최대 특징은 PL의 대상을 종래의 「수지별 규제」에서 「모노머 및 그 외의 출발원료에 의한 규제」로 변경했다는 점에 있다. 즉, 「분자량 1,000이상의 고분자 화합물은 인체에 섭취 되어도 위장기관계에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의 영향은 없다」라고 하는 사고를 도입해, 신규 물질의 심사 대상을 「모노머 및 출발원료」로 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일본의 화심법에 있어서 고분자 화합물의 변이원성시험이나 만성독성시험 등을 면제하는 고분자 플로우 스킴에도 채용되고 있고 미국 FDA도 같은 정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 EU의 PL의 대상물질의 정의는 개개의 수지별 규제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과 미국과의 큰 차이점의 하나이다.

② 사용 제한의 방법(용출(溶出)양 제한)



[표 5] 식품 의사용매에 사용되는 이행 시험조건 (EU)

항목	사용조건	시험조건 ^{주1)}
시간 (7구분)	$t \leq 5$ 분	5분
	5분($t \leq 0.5$ 시간)	0.5시간
	0.5시간($t \leq 1$ 시간)	1시간
	1시간($t \leq 2$ 시간)	2시간
	2시간($t \leq 4$ 시간)	4시간
	4시간($t \leq 24$ 시간)	24시간
	$t \geq 24$ 시간	10일간
온도 (9구분)	$T \leq 5^\circ\text{C}$	5 $^\circ\text{C}$
	$5^\circ\text{C} < t \leq 20^\circ\text{C}$	20 $^\circ\text{C}$
	$20^\circ\text{C} < t \leq 40^\circ\text{C}$	40 $^\circ\text{C}$
	$40^\circ\text{C} < t \leq 70^\circ\text{C}$	70 $^\circ\text{C}$
	$70^\circ\text{C} < t \leq 100^\circ\text{C}$	100 $^\circ\text{C}$ 또는 환류온도
	$100^\circ\text{C} < t \leq 121^\circ\text{C}$	121 $^\circ\text{C}$ ^{주2)}
	$121^\circ\text{C} < t \leq 130^\circ\text{C}$	130 $^\circ\text{C}$ ^{주2)}
	$130^\circ\text{C} < t \leq 150^\circ\text{C}$	150 $^\circ\text{C}$ ^{주2)}
	150 $^\circ\text{C} < T$	175 $^\circ\text{C}$ ^{주2)}

주1) 사용조건에 적절히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온도가 175 $^\circ\text{C}$ 를 넘는 경우 등), 가장 적절한 다른 조건을 사용한다.

주2) 유지(油脂) 및 지방성 식품용 의사용매에만 적용한다. 그 외의 용매의 경우는, 온도는 100 $^\circ\text{C}$ 또는 환류온도를 사용해, 시험 시간은 선택한 시간의 4배로 한다.

EU의 PL에 있어서 개개의 물질의 사용 제한량이 있는 경우 [표 3]과 같이 몇 개인가의 정의에 의한 제한치가 정해져 있다. SML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QM이 많다.

기본적인 정의는 사용 제한치는 리스크 평가의 원칙대로 첨가제도 포함해서 용출 시험 결과에 의한 개개의 물질의 용출량(즉 이행량=섭취량)에서 설정하는 방법으로써 일본과 미국의 사용 제한은 수지에의 첨가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점이다.

개개의 물질의 용출량을 분석해서 적합성을 체크하는 방법인데 개개의 물질의 사용 수지마다의

분석 방법은 해당 메카에서가 아니면 알 수 없다는 면이 있어 실제의 운용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있을 듯하다. 폴리위협에서도 EU등록 물질의 인용에 있어서는 고심하고 있어 기업으로써는 일본과 미국과의 이 차이점을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이행 시험조건

① 시험시료

원칙으로써 최종 제품(기구·용기 포장) 자체를 시료로써 식품 접촉면을 의사 용매에 접촉시켜 시험을 실행한다. 사용실태에 따른 시험법이다.

② 식품의 종류와 의사용매[표 4].

총 이행량을 파악하기 위한 이행 시험은 제품이 실제로 사용될 때의 식품과의 접촉 조건을 상정해 시료는 실제로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만을 식품 또는 의사 용매와 접촉시켜 실행한다. 의사 용매는 식품의 종류에 맞추어 Simulant A~D의 4종류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 일본의 식품 위생법과 비교하면 초산이나 에탄올 농도 및 유성 식품의 의사용매(정제 올리브 오일 vs 헵탄)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③ 이행 시험의 온도와 시간[표 5].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사용될 때의 접촉 시간과 온도를 상정해 [표 5]로부터 실용 상의 가장 엄격한 시간과 온도의 조건을 선택하는 방법이다(worst scenario). 사용 시간은 7구분, 온도는 9구분으로 일본과는 다른 실체에 따른 빈틈없는 설정이다. 다만, 121 $^\circ\text{C}$ 이상의 고온 영역에 있어서의 시험 조건에 관해서는(유성 식품 대상), 제품 예가 적은 탓인지 구체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은 듯하다.

(5) 기능성 배리어 (Functional Barrier)

[표 6] 유럽제국의 식품 포장 관련 법률 · 규제

나라	법률 · 규제의 명칭
독일	식품 · 일용품법. 플라스틱 PL에 관해서는 나라의 연구기관인 BfR (독일 연방 리스크 평가연구소) 이 작성한 권장기준이 있다.
영국	식품법과 식품안전법. 플라스틱 PL에 관해서는 영국 플라스틱 연맹 (BPF) 와 영국 산업생물연구협회 (BIBIRA) 가 작성한 「식품과 접촉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BPF기준) 이 있다.
네덜란드	포장 · 식품용 용구 규칙 (식품법)
벨기에	식품 및 그 재료와 그 외의 제품을 관리하는 법률
프랑스	식품에 접촉하는 재료 및 제품에 관한 법률
이탈리아	이탈리아 식품법, 이탈리아 식품규제
핀란드	식품법, 식품 및 소비생활제품 관련 일반규정
스웨덴	식품법, 스웨덴 식품포장재규칙 (자주규제)
노르웨이	포장규정 (EK규정) : 식품업계와 포장업계의 자주규정
오스트리아	식료, 음료, 식품첨가물, 화장품, 일용품의 거래에 관한 연방법
스위스	식품 및 일용품에 관한 법령 (식품법)

EU의 지령(2007/19/EC)에 있어서 「이행량이 10ppb를 넘지 않으면, 비허가 물질을 포함하는 내부층의 사용은 인정된다(단, 발암성물질, 변이원성물질, 재생품에의 독성물질은 제외한다)」라는 정의가 적용되었다. 이것은 적층 재료의 식품 접촉 층이 배리어성을 갖는 경우, 그 예외(식품 비접촉면)에 플라스틱 재생품 사용의 길을 개척하는 이론적 근거와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어 이후 일본에도 검토해야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6) 다음 PL화 후보

2010.02.22 EFSA의 Press Releases에 의하면 EFSA는 워킹 그룹을 설립해 플라스틱 이외의 식품 접촉 물질에 관한 정보 수집과 해석 작업에 착수하고 있어 2011년 3월까지 EFSA에 보고서를 제출 예정이라고 한다. PL화의 후보 물질로써는 「예를 들면 (such as) 잉크와 접착제」라고 쓰여 있어 빠르면 2011년 봄 이후에 이 물질들의 PL 작성 작업이 개시될 것이라고 추측

된다.

일본에서는 이 2 물질들은 아직 업계 자주 기준에 의한 네가티브 리스트 (NL)로5),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7) EU의 이후 계획

EU는 현재, 현행의(EC) No.975/2009를 대체하는 규칙으로써 플라스틱 시행 규칙(PIM : Plastic Implementation Measure)의 제정을 준비 중으로 이 시행 규칙 중에 플라스틱에 관한 세칙을 정할 예정이다. 이후는 더욱 꼼꼼한 부분까지 실질적인 통합이 진행될 것이라고 추측된다.

(8) 각국의 법규제류

EU 각국에 있어서는 일본의 식품 위생법에 상응하는 나라의 법률에 의해 규제하고 있는데 일부 독일과 영국에서는 PL 등의 구체적 세칙은 나라의 연구 기관의 권장 기준이나 업계자주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가 있다. 현 시점에서는 EU로써 규제하고 있지 않은 항목은 각국의 규제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해당 나라의



[표 7] 용기 · 포장에 관한 위생표준(중국)

No.	위생표준명	기준번호
1	식품용기, 포장재에 사용되는 PVC 위생표준	GB4803-1994
2	법랑식품용기 위생표준	GB4804-1984
3	식품통조림 내벽PF도료 위생표준	GB4805-1994
4	식용고무제품 위생표준	GB4806.1-1994
5	고무캡 위생표준	GB4806.2-1994
6	식품용기 내벽 VC 도료 위생표준	GB7105-1986
7	식품용기내벽 우루시을 도료 위생표준	GB9680-1988
8	식품포장에 사용되는 PVC마무리 제품 위생표준	GB9681-1988
9	식품 통조림 내벽 도료 위생표준	GB9682-1988
10	복합식품 포장봉투 위생표준	GB9683-1988
11	스테인레스강제 용기 위생표준	GB9684-1988
12	식품용기, 포장재에 사용되는 보조 · 가공조제 위생표준	GB9685-2008
13	식품용기내벽 PA도료 위생표준	GB9686-1988
14	식품포장에 사용되는 PE마무리 제품 위생표준	GB9687-1988
15	식품포장에 사용되는 PP마무리 제품 위생표준	GB9688-1988
16	식품포장에 사용되는 PS마무리 제품 위생표준	GB9689-1988
17	식품포장에 사용되는 MF내부마무리 제품 위생표준	GB9690-1988
18	식품포장에 사용되는 PE 위생표준	GB9691-1988
19	식품포장에 사용되는 PS 위생표준	GB9692-1988
20	식품포장에 사용되는 PP위생표준	GB9693-1988
21	알루미늄제 식품용기 위생표준	GB11333-1989
22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유기 실리콘 접착방지 도료 위생표준	GB11676-1989
23	식료캔 내벽 수용성 에폭시 도료 위생표준	GB11677-1989
24	식품용기 내벽 PJFE 도료 위생표준	GB11678-1989
25	식품포장용 원지 위생표준	GB11680-1989
26	식품용기, 포장재에 사용되는 PET마무리 제품 위생표준	GB13113-1991
27	식품용기, 포장재에 사용되는 PET 위생표준	GB13114-1991
28	식품용기, 포장재에 사용되는 PY 및 유리섬유보강 플라스틱 제품 위생표준	GB13115-1991
29	식품용기, 포장재에 사용되는 PC 위생표준	GB13116-1991
30	도제 조리기구 위생표준	GB13121-1991
31	규조토 위생표준	GB14936-1994
32	식품용기, 포장재에 사용되는 PC마무리 제품 위생표준	GB14942-1994
33	PVC제 캡, 스페이서, 코팅제 위생표준	GB14944-1994
34	코팅포장재 위생표준	GB14967-1994
35	식품용기, 포장재에 사용되는 PVDF 위생표준	GB15204-1994
36	식품포장재에 사용되는 PA6 위생표준	GB16331-1996
37	식품포장재에 사용되는 나일론마무리 제품 위생표준	GB16332-1996
38	식품용기, 포장재에 사용되는 ABS마무리 제품 위생표준	GB17326-1998
39	식품용기, 포장재에 사용되는 ASA마무리 제품 위생표준	GB17327-1998
40	식물섬유 식품용기 위생표준	GB19305-2003

[표 8] GB9691-1988 : 식품 포장 폴리에틸렌 위생표준

항목	규격
외관 · 냄새	백색파레트 이상한 냄새 및 이물의 냄새가 없을 것
물리적 화학적 항목	건조감량 ≤ 0.15 (%) 연소잔분(殘分) ≤ 0.20 (%) 헥산추출 ≤ 0.15 (%)

법규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의 법규제의 명칭을 [표 6]에 소개한다.

2. 중국의 동향

(1) 중국의 법규제

1) 식품 안전법의 시행

중국에서는 2009년 6월 1일, 수 년 빈발하고 있는 교자 사건 등의 음식의 안전문제에의 대응을 목표로 새롭게 식품 안전법이 시행되고 동시에 종래의 식품 위생법(1995년 시행)은 폐지되었다.

이 식품 안전법은 전부 104조로 되어(종래의 식품 위생법은 57조), 식품 안전을 위한 관리 ·

감독의 강화, 식품안전 모니터링과 리스크 평가의 체제구축, 벌칙 규정의 강화, 식품 안전 기준의 정리 · 재구축과 강화,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의 회수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질량도 함께 크게 개정되었다.

이 법률의 구성은 하기에 나타내듯이 제 1장부터 제 10장까지 있어 제 1장의 제 4조에 의해 새롭게 국무원(내각)에 식품 안전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일본과 같이 내각 직결 조직이다.

또한, 제 3장의 식품 안전 기준의 항에서는 종래는 식용 농산물의 품질, 식품 위생기준, 식품품질에 관한 업계 기준 등에 분산되어 있던 안전 기준을 정합시켜 모두 나라가 정하는 위생 표준에 의해 규제할 것이 명기되어 있다. 또, 식품용 용기 포장은 제 3장의 식품 안전 기준을 만족할 것과 함께, 제 4장에서는 세정 · 소독의 실시, 오염 방지, 무독으로 청결할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 1 장 총칙

제 2 장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과 평가

제 3 장 식품안전기준

[표 9] GB9687-1988 : 폴리에틸렌마무리 제품에 관한 위생표준

항목		규격	
외관 · 냄새		통상의 광택 이상한 냄새 및 이물의 냄새가 없을 것	
물리적 화학적 항목	증발잔류물 (mg/L)	4%초산, 60℃, 2시간 ≤	30
		65%에탄올, 60℃, 2시간 ≤	30
		헥산, 60℃, 2시간 ≤	60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mg/L)	물, 60℃, 2시간 ≤	10
	중금속 (납) (mg/L)	4%초산, 60℃, 2시간 ≤	1
변색시험	에탄올	음성	
	식용유, 투명유	음성	
	침출액	음성	



- 제 4 장 식품의 제조 · 판매
- 제 5 장 식품의 검사
- 제 6 장 식품의 수출입
- 제 7 장 식품안전사고의 처리
- 제 8 장 감독관리
- 제 9 장 법적책임
- 제10장 부칙

2) 식품용 용기 · 포장에 관한 규칙

식품용 용기 · 포장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포장해 담아 사용하는 종이, 죽, 금속, 범랑, 도자기, 비닐, 고무, 천연섬유, 합성섬유, 유리 등의 제품 및 직접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과 접촉하는 도료를 가리킨다」고 정의되어 있다. 또, 식품의 제조 · 판매에 사용하는 기구, 설비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 유통, 사용의 과정에서 직접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접촉하는 기계, 파이프, 컨베이어 용기, 용구, 식기 등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다(제 10장 부칙의 제 99조).

3) 강제 표준

식품용 용기 · 포장에 관한 위생 표준으로써는 [표 7]에 보이듯 약 40개의 「위생표준」이 있다.

이 위생표준들은 Guojia Bioazhun(국가표준)의 어원으로 「GB○○○○-연도」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국가표준으로써는 준수의무가 있는 강제 표준 외에 또 하나의 권장표준이 있어 GB/T 라고 타이틀을 붙여 표시되는데 식품 포장 관련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수지의 위생표준으로써는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아미드(PA), 폴리카보네이트(PC),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ABS) 등이 있

어 통상 용기 포장에 범용되는 수지는 이 위생 표준의 대상이 되어 있다.

또한, 각 수지에는 대범수지와 마무리제품에 관한 두 가지의 위생 표준이 있어 각각 수지 자체와 완성제품(일본의 식품 위생법의 기구 및 용기 포장에 상당)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위생 표준의 예로써 [표 8]에 식품포장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에 관한 위생표준(GB 9691-1988), [표 9]에 폴리에틸렌 마무리제품 위생표준(GB-9687-1988)의 개요를 나타낸다. 후자는 폴리에틸렌수지를 소재로써 사용하는 최종 폴리에틸렌 제품에 관한 필요조건을 규정하고 있어 식탁용 식기류, 용기, 포장, 기구 등에 적용된다.

[표 8]과 [표 9]에서 외관과 냄새는 일본과 구미에는 볼 수 없는 중국의 독자적인 규격인데 시험법과 판단 기준 등에 관해서는 불명한 점이 많아 현재 조사 중에 있다. 핵산추출은 일본과 유럽에는 없는 규격으로 아마 미국 FDA규격의 올레핀폴리머에 있어서의 핵산추출량의 규격을 인용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또한, 증발 잔류물의 시험은 유럽(EU)의 총 이행량을 측정하는 용출시험이나 일본의 식품위생법의 용출시험과 유사한데 규격치(핵산은 60ppm) 및 용출온도와 시간에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과 중금속은 일본의 식품 위생법과 같은 규격치이다.

또, [표 9]의 변색 시험도 일본과 구미에서는 볼 수 없는 중국의 독자적인 규격인데 시험 목적이나 시험 방법에 관해서는 상세하지 않아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차항(2)에서 서술하듯이 첨

[표 10] 식품 공전에 있어서의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규격(한국)

(1) 일반기준	(3) 시험방법
(2) 재질별 규격	1. 일반시험기준
1. 합성수지제	2. 합성수지제 시험방법
2. 셀로판 :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제	3. 셀로판,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제 시험방법
3. 고무제	4. 고무제 시험방법
4. 종이 또는 판지제	5. 종이 또는 판지제 시험방법
5. 금속, 금속캔제	6. 금속제 시험방법
6. 목재류	7. 목재류 시험방법
7. 유리, 도자기, 법랑 및 용기류	8. 유리, 도자기, 법랑 및 용기류 시험방법
8. 전분제	9. 전분제 시험방법

(일부 개정 2009. 5. 13, 식품 의약품 안전청 고시 제 2009-29호)

가제의 PL이 2009년 6월 1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다음의 개정 대상으로써 수지 및 완성제품의 규격 개정점토에도 착수한 모양이다. 가까운 장래에 순차 개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추측된다.

(2) 첨가제 파지티브 리스트(PL)의 대 개정

1) 종래의 위생 표준(구 GB9685-2003)

식품용 용기 · 포장을 제조할 때의 보조 · 가공 조제에 관한 위생 표준(구 GB9685-2003)은 식품용기, 포장재, 식품기계류나 플라스틱 · 고무 · 도료 · 종이 · 접착제 · 인쇄용 잉크 등의 제조용

보조 · 가공조제를 대상으로 해 65개 화학물질이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다. 또, 중국의 법 규제에서는 파지티브 리스트(PL) 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본과 구미와 같은 PL이다.

2) PL의 대 개정 시행(GB9685-2008)

중국은 2008년 4월에 새로이GB9685-2003의 PL 대폭 개정안을 WTO에 통달해 그 후 퍼블릭 코멘트를 거쳐 2009년 6월 1일에 시행했다.

이 신 PL은 종래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던 첨가제에 수많은 미등록품이 있는 것, 화합물의 중복이나 첨가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물질이 있는 것, 등 다수의 의문점이나 문제점이 있어 일본에서 재삼 문의를 했는데 명쾌한 회답이 없는 채로 이번의 시행을 하게 되었다.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지만 그 PL의 개요는 이하와 같다.

① 일본과 구미 3자의 PL 안에 두 개 이상 등록되어 있는 물질을 게재(일본은 3위생단체의 PL)

② 물질 수는 현행의 65에서 한 번에 약 960으로 증가(거의 일본, 유럽, 미국의 평균 정도 레벨이다)

[표 11] 식품공전의 일반기준 (한국)

조항	규제 내용
조항1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식품을 오염시키는 구조를 금지
조항2	포장용기 재질 기준에서 비휘발성 유출물은 제외
조항3	제조 또는 수리에 있어서, 땀 인두의 금지
조항4	전극은 철, 알루미늄, 플라티나, 티탄, 스테인레스에 한정
조항5	구리제(동제)포장용기 식품과 직접접촉하는 면은 위생적 처리 할 것
조항6	식품 위생법에서 인가되어 있는 색소만 사용가능
조항7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의 인자금지
조항8	식품포장 용기의 제조에 있어서, DEHP의 사용금지
조항9	랩 제조에 있어서 DEHA의 사용금지



[표 12] 재질별 규격의 합성수지 타이틀 (한국)

<p>1. 합성수지제</p> <p>1-1 poly(vinyl chloride) : PVC</p> <p>1-2 polyethylene : PE 및 polypropylene : PP</p> <p>1-3 polystyrene : PS</p> <p>1-4 poly(vinylidene chloride) : PVDC</p> <p>1-5 poly(ethyleneterephthalate) : PET</p> <p>1-6 phenol-formaldehyde resin : PF</p> <p>1-7 melamine-formaldehyde resin : MF</p> <p>1-8 urea-formaldehyde resin : UF</p> <p>1-9 polyacetal, polyoxymethylene (POM)</p> <p>1-10 Acrylic resin</p> <p>1-11 polyamide : PA</p> <p>1-12 polymethylpentene : PMP</p> <p>1-13 polycarbonate : PC</p> <p>1-14 poly(vinyl alcohol) : PVA</p> <p>1-15 polyurethane : PU</p> <p>1-16 polybutene-1 : PB-1</p> <p>1-17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 : ABS 및 acrylonitrile-styrene copolymer : AS</p> <p>1-18 polymethacrylstyrene : MS</p> <p>1-19 poly(butylene terephthalate) : PBT</p>	<p>1-20 polyarylsulfone : PASF</p> <p>1-21 polyarylate : PAR</p> <p>1-22 hydroxybutyl polyester : HBP</p> <p>1-23 polyacrylonitrile : PAN</p> <p>1-24 fluorocarbon resin : FR</p> <p>1-25 poly(phenylene ether) : PPE</p> <p>1-26 lonomeric resin</p> <p>1-27 ethylene-vinylacetate copolymer : EVA</p> <p>1-28 methylmethacrylate-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 : MABS</p> <p>1-29 poly(ethylenaphthalate) : PEN</p> <p>1-30 epoxy resin</p> <p>1-31 poly(phenylenesulfide) : PPS</p> <p>1-32 poly(ethersulfone) : PES</p> <p>1-33 poly(cyclohexane-1,4-dimethylene erephthalate) : PCT</p> <p>1-34 polyimide : PI</p> <p>1-35 polyetheretherketone : PEEK</p> <p>1-36 polyactide, poly(lactic acid) : PLA</p> <p>1-37 butylenesuccinate-adipate copolymer : PBSA</p> <p>1-38 cross-linked polyester resin</p>
--	---

38종류의 수지

(일부 개정 2010. 7. 12, 식품 의약품 안전청 고시 제 2010-56호)

③ 첨가제 이외에 일부 모노머나 반응 개시제 등도 포함되어 있다(EU로부터의 인용)

어느 것이나 질량 함께 한 번에 일본과 구미에 필적하는 내용의 PL이 시행된 것은, 중국의 법규체로써는 큰 진전으로 특히 근린 아시아 제국에의 수출 공세의 새로운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추측된다.

또한, 중국에서는 구미로부터의 전문가를 초청해 그 지도를 받으면서 규격 개정의 제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행정에 전문가가 없는 일본에 있어서는 큰 위협이 될 것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의

동향에 주시가 필요할 것이다.

3) PL 미등록품에의 대응상황

이번의 신 PL에 있어서 종래 일본으로부터 수출 실적이 있는 수지에 사용되고 있던 첨가제 중에는 이번의 PL에 미등록된 물질이 다수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다.

PL 미수재 물질의 사용은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폴리위협 등이 그 물질들의 리스트를 정리해서 경제 산업성 등을 통해서 중국 당국에 추가 등록을 요망하고 있었는데 2010년 7월, 중국 위생부(질병예방제어센터) 영양식품 안전 연구소의

[표 13] 타이의 고시 295호의 개요

식품분류	규제 대상 수지명
일반식품	폴리염화비닐 (PVC), 폴리에틸렌 (PE) 및 폴리프로필렌 (PP), 폴리스틸렌 (PS), 폴리염화비니리덴 (PVDC),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폴리카보네이트 (PC), 나일론 (PA), 폴리비닐알코올 (PVA), 폴리에틸메타크릴레이트 (PMMA), 폴리에틸렌텐 (PMP), 멜라민
우유 및 유제품	폴리에틸렌 (PE) 및 에틸렌 1-알켄 포몰리머 폴리프로필렌 (PP), 폴리스틸렌 (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왕소장 대리가 내일 했을 때, 「세계에서 총 약 3,000건의 추가 신청이 있어 이것을 심사 중이다. 이 작업에는 많은 시간과 인원이 필요한데 2010년 중으로는 작업을 마치고 싶다」고 하는 회답을 얻었다. 정말 어디까지 인가되는지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이다.

이후, 이번의 PL 추가 신청에서도 인가되지 않는 물질은 신규 신청으로 취급 되는데 그 경우의 신청 양식이나 필요 독성 데이터 등에 관해서도 현재 조회 중으로 아직 최종적인 통지는 없는 상황에 있다. 하지만 신규화합물의 리스크 평가에 관해서는 일본과 구미는 거의 같은 평가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이것들에 준하는 내용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후, 중국에 수출하거나 현지 생산하는 기업은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나라

나 관계 단체에 조회나 확인을 해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3. 한국의 동향

(1) 나라의 규제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 건강, 표시를 관장하는 것은 한국 식품 의약품 안전청(KFDA :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다.

이 KFDA의 다섯 개 국 중 하나에 식품 안전국이 있어 이 아래에 식품 기준부와 영양정책부의 두 가지 부가 있다. 요원은 두 부서 합해서 191명이다.

(2) 관련법규

기간이 되는 것은 일본과 같은 명칭의 「식품위생법」(Food Sanitation Law)으로 1986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법률 제

[표 14] 타이의 합성 수지 용출 시험 조건과 규격 기준 (고시 295호)

항목	규격기준	
식품의사용매	① pH?5	물
	② pH>5	4%초산
	③ 알코올식품	20%알코올
	④ 유성식품	헵탄
규격	30ppm	단 이하의 예외 있음. · PVC는 150ppm, · PS는 240ppm, · PMP는 120ppm, · PE와 PP의 100℃이하 사용할 경우는, 150ppm



[표 15] 타이의 공업단체의 자주기준

TIS번호	타이틀
TIS 2093-2544 (2001)	아크릴계 수지제 식품용기
TIS 1310-2538 (1995)	리사이클 플라스틱의 심볼
TIS 1254-2537 (1994)	플라스틱제 지퍼봉투
TIS 1181-2536 (1993)	플라스틱제 포유병
TIS 1069-2549 (2006)	식품접촉용도의 착색제
TIS 1027-2534 (1991)	식품용 플라스틱제 봉투
TIS 1002-2533 (1990)	플라스틱제 식품 (나이프, 포크, 스푼)
TIS 998-2533 (1990)	음료수용 플라스틱제 용기
TIS 997-2533 (1990)	식초용 플라스틱제 용기
TIS 776-2531 (1988)	플라스틱제 빨대
TIS 653-2529 (1986)	우유 및 유제품용 플라스틱제 용기 · 포장필름

[표 16] 인도 표준규격

표준규격번호	타이틀
IS : 10146	식품에 접촉하는 폴리에틸렌 규격
IS : 10142	식품에 접촉하는 스티렌폴리머 규격
IS : 10151	식품에 접촉하는 폴리염화비닐 규격
IS : 10910	식품에 접촉하는 폴리프로필렌 규격
IS : 11434	식품에 접촉하는 아이오노머 수지 규격
IS : 11704	에틸렌 · 아크릴산 공중합체 규격
IS : 12252	폴리알킬렌 테레프탈레이트 규격
IS : 12247	나일론 6 규격
IS : 13601	에틸렌 · 초산비닐 규격
IS : 13576	에틸렌 · 메타크릴산 규격

3823호).

이 법률은 전부 합해서 13장(102조)과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제 2장이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제 3장이 용구 및 용기 포장이다. 또, 제 5장에는 「기준규격을 수록한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 보급시켜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것에 기초해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이 「식품공전」으로써 정해져 있다(일부개정 : KFDA고시 제

2009-29호).

여기에서 기구란 「음식기 및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진열, 수수 또는 섭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기계, 기구 그 외의 것을 말한다. 단, 농업 및 수산업에 있어서의 식품의 섭취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그 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용기 포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어 또는 포장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넘겨지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일본과 같은 정의이다.

(3) 식품공전

식품공전에 있어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 타이틀을 (표 10)에 나타낸다. 이 규격은 일반 규격과 개별규격 및 시험방법의 3부 구성으로 되어있다. 셀로판, 종이, 전분, 목재류도 규제 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일본과의 차이점이다.

일반 기준으로서는 (표 711)에 나타내듯이 아홉 개의 조항에 의해 사용 제한이나 사용 금지가 규정되어 있다. 재질별 규격으로써는 수지, 셀로판, 고무, 지 · 판지, 금속 · 금속캔, 나무, 전분의 여덟 개의 재질로 나누어 각각에 정의, 재료 기준, 용출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또, 재질별 규격의 수지로서는 (표 12)에 나타내듯이 2010년 7월의 개정에 의해 38종류의 수지가 수재되어 있다. 열경화성 수지나 변성수지, 폴리젯산 (PLA) 도 있어 일본에 있어서의 업계 자주 기준은 폴리위협 등의 3위생 단체 합해서 32수지인 것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일본 이상으로 세세한 구분이 되어 있다.

또, 수지 및 첨가제의 파지티브 리스트 (PL)에 관해서는 3년 정도 전에는 폴리위협의 PL을 참

고로 한 안이 나왔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후 특히 정보는 없고 미제정의 상황에 있다.

4. 타이의 동향

(1) 법 규제

타이에는 일본의 식품위생법과 유사한 「식품법」이 있어(Food Act B.E.2522), 보건성의 식품 의약품국(Thai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관장하고 있다.

이 식품법에 기초하는 고시 295호(Notification No.295)에 의해 용기 포장에 관련된 규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고시 295호는 2004년에 구 고시 111호를 개정한 것인데 합성수지의 종류는 종래의 7종류에서 12종류로 늘었다. 타이는 폴리위협과도 접촉해서 일본의 안전 기준을 참고로 하면서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때문인지 일본과 같이 일반 식품과는 달리 우유 및 유제품에 관한 규격이 있어 2004년의 개정에 의해 PET가 추가되어 있다.

또한 타이에서는 2007년경부터 법 규제의 국제적 정합화 및 파지티브 리스트 작성의 검토를 개시하고 있어 이후 국제적 정합화를 의도한 규격 기준의 개정, 파지티브 리스트 제정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의 정정불안도 있어 그 진보 상황에 관해서는 불명하다.

[표 13]에 고시 295호의 규제 대상 수지를 표시한다.

(2) 규격기준

합성수지에 관해서는 [표 14]에 나타내듯이, 일본의 식품 위생법과 같이 재질 시험과 용출 시험이 있어 이것들의 시험조건 및 규격은 일본과 유사하다.

(3) 자주공업기준

타이에서는 나라가 정하는 법률(고시 295호) 외에, Thai Industrial Standard Institute (TISI)라고 불리는 공업단체가 작성하고 있는 자주 기준이 있어 전부 16개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 [표 15]에 주요한 타이틀을 소개한다. 플라스틱에 사용하는 착색제, 포유병, 식기나 봉투, 용기 등에 관한 기준이 있어 일본의 식품 위생법에 있어서의 용도별 규격(고시 제 370호)와 닮은 규격이라고 추측된다. 또한, 이 공업 기준의 식품법과의 정합성·자리매김, 및 산업계의 보급정도에 관해서는 아직 상세하지 않아, 조사 중에 있다.

5. 인도의 동향

(1) 법 규제

인도에는 1954년에 제정된 「식품오염 방지법」(The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에 의해 제정되어 있다. 이 법률은, 식품 기준 중앙 위원회가 심의한 뒤 중앙 정부가 시행한 것이다.

또한, 중앙 식품 연구소가 주로 식품 분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2) 식품 포장의 규제

식품 오염방지법의 PartⅣ 중에 식품 접촉용도의 용기 포장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중에서 「판매와 라이선스에 관한 조건」으로써 이하의 규정이 있다.

1)「이하의 원료나 금속제의 조리도구·용기를 식품의 조리나 포장·보관에 사용하는 경우는 식품용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① 녹이 슬은 용기

② 에나멜 가공된 용기로, 흠이 나서 녹이 있는 것



③ 올바르게 주석도금 되어 있지 않은 구리 또는 놋쇠제의 용기

④ 알루미늄제 용기로 IS : 20 또는 IS : 21의 화학성분에 적합하지 않은 용기

(주 : IS : 20과 IS : 21은 단조 또는 주조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제 조리기구의 국가 규격)

⑤ 일부 또는 전부인가에 관계없, 식료품의 포장 또는 보존용 기구·용기로써 사용하는 플라스틱제 용기로 표 16에 나타내는 인도 표준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

⑥ 사용이 완료된 주석 및 플라스틱제 용기는 식용유·지방의 포장에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즉, 인도의 식품 포장 규격의 주요 부분은 인도 표준 제정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Specification)이 정하는 인도 표준규격 : IS (Indian Standards)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6.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1) 법 규제

베트남에서는 2010년 6월, 종래의 식품 위생법을 대신해 새롭게 식품 안전법이 제정되어 2011년 6월 시행 예정이다.

일련의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 등의 영향에 의해 베트남에서 일본에의 야채와 가공품의 수출량은 급증하고 있는데(1990년~2006년까지 약 6배의 증가), 베트남산 식품에서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었던 사건도 있어 식의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 엿보인다.

법률의 명칭도 중국과 같아 그 제정 시기로부터 봐서도 중국의 법 개정의 영향이 있다고 추측된다.

이하에 법 규제의 개요를 소개한다.

(2) 식품안전성의 확보 기준

생산자는 하기 2 개의 기준을 만족할 것이 요구된다.

- 식품생산 과정에서의 위생기준
- 병원미생물,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등 인간의 건강,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사용기준(허용기준) 또한, 식품의 종별에 의해서는 상기의 일반적인 기준 외에 하기의 규격도 준수해야만 한다. 상세한 것에 관해서는 관장 기관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격
- 기구 및 용기 포장, 라벨 표시에 관한 규격
- 식품의 보관에 관한 규격

(3) 식품 안전성의 확보 기준 준수 증명서

식품제조업, 식품판매업의 사업 등록 증명서를 취득했고 또 식품안전성의 확보 기준을 만족하는 식품제조업자, 식품판매업자에는 식품안전성의 확보 기준 준수 증명서가 발행된다. 그 신청 서류로써 사업 등록 증명서(공증판), 시설·장치에 관련된 증명서, 고용자 및 작업원의 건강진단서, 식품안전 위생에 관련되는 지식 트레이닝 코스 수강증명서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수입식품

수입식품은 베트남에 유통하기 전에 수입품질 및 안전성 기준을 확보해야만 하고 또한 수입업자는 검사기관에 인증 받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 그 구체적인 신청서류가 기재되어 있다.

7. 마치며

본고에서는 유럽 및 아시아 제국의 법 규제 개정의 최신 동향을 소개 했는데 모두 식의 안전·

안심 확보를 위해 나라의 법률로써(EU는 EU전체의 규칙으로) 용기·포장의 규격을 정비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타이가 일본의 식품 위생법과 매우 유사한데 다른 나라는 유럽과 미국의 지도나 영향도 있는 탓인지 일본과는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 실정이다.

특히 중국은 유럽과 미국의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제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또 FDA도 2009년 봄에 북경주재소를 개설하여 중국에의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의 법 규제는 그 경제 규모나 화교 등에 의한 파급력에서 볼 때, 이후 특히 ASEAN제국에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러한 상황 아래 일본에 있어서는 1982년의 고시 20호에 의한 개정 이래, 기본적인 정의에 관한 큰 개정은 행해지지 않고 또 안전 기준의 근간이 되는

수지 등의 원재료의 파지티브 리스트는 약 40년 간에 걸쳐 업계 자주 기준 방식으로 그 중에서도 접촉제나 잉크는 네가티브 리스트이다.

한편, 식품 위생법의 일반 식품 대상의 고시 370호에 관해서는 이 수년간 후생노동 과학연구가 산학관협동으로 진행해 왔는데 현재 2010도~2012년도의 3개년 계획의 연구가 진행 중으로, 2013년 봄쯤에는 개정의 최종적인 원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개정은 아마 고시 20호 이래의 대규모 개정이 될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리고 이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제적인 신뢰성의 향상을 위해 산학관협동에 의한 나라로써의 PL제도의 본연의 모습이나 리스크 평가의 심의 체제를 의논해서 국제적 정합화를 진행해 세계에 손색이 없는 법 규제 류에의 개혁이 요망된다. [K]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